

## 4. 國土利用管理法施行規則中改正令

건설교통부령 제111호 1997. 7. 26

### 주요골자 및 개정이유

“토지거래계약허가증 및 불허가처분통지서”를 “토지거래계약허가증” 및 “토지거래계약불허가처분통지서”로 구분하고, “토지거래계약신고필증”을 “토지거래계약사후신고필증” 및 “토지거래계약신고필증”으로 구분하여 전산발급에 편리하도록 하려는 것임.

### 주요 내용

국토이용관리법시행규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의 7제3항중 “영 제7조제1항제2호”를 “영 제7조제2호”로 한다.

제3조의 2 중 “법 제13조의 3 제5항”을 “법 제13조의 3 제6항”으로, “공업단지”를 “산업단지”로 한다.

제5조제2항 본문중 “영 제15조제2항”을 “영 제17조제2항”으로 한다.

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8조(허가증등의 서식) 법 제21조의 3 제5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거래계약허가증은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하고, 토지거래계약불허가처분통지서는 별지 제7호의 2서식에 의한다.

제1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0조(허가구역안에서의 토지거래계약신고서) ① 법 제21조의 3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거래계약신고서는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한다.

② 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21조의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

받은 때에는 별지 제8호의 2서식의 토지거래계약사후신고 필증을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.

제10조의 2 중 “별지 제7호의 2서식”을 “별지 제8호의 3 서식”으로 한다.

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11조(신고구역안에서의 토지거래계약 신고서) ① 법 제21조의 7 제1항 및 영 제2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거래계약신고서는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한다.

② 제1항의 신고서에는 제7조제2항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.

③ 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21조의 7 제1항 및 영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때에는 별지 제8호의 4서식의 토지거래 계약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. 다만, 그 신고된 내용이 법 제21조의 8 제1항 각호에 해당되어 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이 신고인에게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것을 권고하고, 그 권고에 따라 강구한 조치에 관하여 법 제21조의 8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할 것을 요구한 때에는 그 보고를 받은 후에 이를 교부한다.

제15조의 2 본문 중 “특별시장·광역시장 또는 도지사”를 “특별시장·광역시장

또는 도지사(이하 “시·도지사”라 한다)로 한다.

제37조 중 “특별시장·광역시장 또는 도지사(이하 “시·도지사라 한다)”를 “시·도지사”로 한다.

제38조 본문 및 동조제1호 내지 제6호중 “입안·변경”을 각각 “결정·변경”으로 한다.

별지 제1호의 2서식 확인내용의 도시계획의 용도지구란중 “풍치·주차장정비”를 “풍치”로 한다.

별지 제2호의 2서식중 “국토이용관리법 제13조의 3 제5항”을 “국토이용관리법 제13조의 3 제6항”으로, “공업단지”를 “산업단지”로 한다.

별지 제6호서식의 앞면 중 “따라”를 “의하여”로 하고, 동서식의 뒷면 근거법규란 중 “토지거래허가구역”을 “허가구역”으로, 동면 유의사항란 중 “(법 제32조의 2)”를 “(법 제33조의 2)”로 한다.

별지 제7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별지 제7호의 2 서식을 별지 제8호의 3 서식으로 하고, 별지 제7호의 2 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.

별지 제8호서식의 앞면중 “따라”를 “의하여”로 하고, 동서식의 뒷면 근거법규란중 “토지거래신고구역”을 “신고구역”으로 한다.

별지 제8호의 2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별지 제8호의 4 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.

별지 제9호서식 중 “주민등록번호(법인등록번호)”를 “주민등록번호”로 하고, 동서식 중 “의거”를 “의하여”로 한다.

별지 제9호의 2서식중 “주민등록번호(법

인등록번호)”를 “주민등록번호”로 한다.

별지 제13호서식 중 “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58조 제3항”을 “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58조제4항”으로 한다.

## 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지 제7호 서식]

제 호	<b>토 지 거 래 계 약 허 가 증</b>					
접수일자				일련번호		
매 수 인	성명				주민등록번호 (법인등록번호)	
	주소					
매 도 인	성명				주민등록번호 (법인등록번호)	
	주소					
허가사항	대상권리 :				예정금액(원)	
	번호	소재지( )	공부 지목	현실 지목	면적(m <sup>2</sup> )	이용목적
공 작 물	종 류		내 용		예정금액(원)	
<p>귀하가 신청한 토지거래계약허가신청에 대하여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 3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토지거래계약을 허가합니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년 월 일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시장·군수·구청장 (인)</p>						

※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국토이용관리법 제33조의 2 제2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200만원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.

30301-00711일

210mm×297mm

'97. 6. 20 승인

일반용지 60g/m<sup>2</sup>

[별지 제7호의 2 서식]

제 호		토지거래계약불허가처분통지서						
접수일자					일련번호			
매 수 인	성명				주민등록번호 (법인등록번호)			
	주소							
매 도 인	성명				주민등록번호 (법인등록번호)			
	주소							
불 허 가 사 항	불허가사유 :							
	대상권리 :				예정금액(원)			
	번호	소재지( )	공부 지목	현실 지목	면적(m <sup>2</sup> )		이용목적	
공 작 물	종 류		내 용			예정금액(원)		
<p>귀하가 신청한 토지거래계약허가신청에 대하여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 3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토지거래계약을 허가하지 아니합니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년 월 일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시장·군수·구청장 (인)</p>								

※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국토이용관리법 제33조의 2 제2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200만원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.

30301-00711일

210mm×297mm

'97. 6. 20 승인

일반용지 60g/m<sup>2</sup>

[별지 제8호의 2 서식]

제 호		토지거래계약사후신고필증					
접수일자				일련번호			
매수인	성명			주민등록번호 (법인등록번호)			
	주소						
매도인	성명			주민등록번호 (법인등록번호)			
	주소						
신고사항	대상권리 :			거래금액(원)			
	번호	소재지( )	공부 지목	현실 지목	면적(m <sup>2</sup> )	이용목적	
공작물	종 류		내 용		거래금액(원)		
<p>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거래계약신고를 하였음을 증명합니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년 월 일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시장·군수·구청장 (인)</p>							

30301-00711일

'97. 6. 20 승인

210mm×297mm

일반용지 60g/m<sup>2</sup>

[별지 제8호의 4 서식]

제 호	토 지 거 래 계 약 신 고 필 증					
접수일자				일련번호		
매 수 인	성명			주민등록번호 (법인등록번호)		
	주소					
매 도 인	성명			주민등록번호 (법인등록번호)		
	주소					
신고사항	대상권리 :			예정금액(원)		
	번호	소재지( )	공부 지목	현실 지목	면적(m <sup>2</sup> )	이용목적
공 작 물	종 류		내 용		예정금액(원)	
<p>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 7 제1항 및 영 제2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거래 계약신고를 하였음을 증명합니다.</p> <p style="margin-left: 200px;">년 월 일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시장·군수·구청장 (인)</p>						

30301-01011일

'97. 6. 20 승인

210mm×297mm

일반용지 60g/m<sup>2</sup>

주택회보